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

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

- 『사업재편 2.0 전략』 -

2020. 9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1

Ⅱ. 사업재편 제도 운영현황 2

Ⅲ. 사업재편 활성화 추진방향 5

Ⅳ. 세부 추진과제 6

Ⅴ. 향후 추진일정 12

Ⅰ. 추진배경

(1) 주력산업은 구조적 한계에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 심화

□ 우리 **주력산업은 중국의 부상,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질서 급변**으로 **경쟁력 한계에 봉착***하여 **구조적 혁신 필요성이 지속 대두**

* **한계기업의 제조기업 중 비율**: 7.4%('10년) → 9.5%('18년)으로 확대(한은, '20.7월)
↳'이자보상배율 1 미만'(영업이익<이자비용)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

□ 한편, 계속되는 **팬데믹 경기 충격**으로 수출* 및 고용감소**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의 **불확실성이 확대**

* 수출(%): ('20.3)△1.7% (4)△25.6 (5)△23.8 (6)△10.8 (7)△7.1 (8)△9.9
** 제조업 고용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0.3)△2.3 (5)△5.7 (6)△6.5 (7)△5.3 (8)△5.0

(2) 코로나19 發 경제충격은 산업의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

□ 최근 제조업이 처한 **급격한 경영악화**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이기보다는 **전 세계 경제가 함께 겪는 공급·수요 복합위기**

* '20년 경제성장률 전망(OECD) : 전 세계(△4.5%), 한국(△1.0%), 중국(△1.8%), 미국(△3.8%)

□ **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,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세계 산업질서의 급격한 변화**는 **새로운 기회의 場을 제공**

(3) 선제적 사업재편 가속화 → 코로나 시대의 산업강국 도약

□ 급변하는 **산업 대전환기**를 맞아 선제적 대응과 혁신 촉진 없이는 **경쟁력 유지 및 생존이 어려운 상황**

□ 경쟁국 대비 **뛰어난 복원력 및 제조·디지털 인프라 강점을 활용, 체질개선과 혁신을 과감히 추진**한다면 **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선점 가능**

⇨ 우리 주력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체질변화 모멘텀과 산업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가동 필요

Ⅱ. 사업재편 제도 운영현황

1 제도개요 및 운영현황

1 사업재편 제도 개요

○ **(내용)** '16년 「**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이하 기업활력법)**」을 제정하여 기업의 **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**

- **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**함으로써,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

<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>

구 분	사업재편	구조조정	
특 징	**선제적·자율적** 구조조정	**사후적·타율적** 구조조정	
적용법률	기업활력법	기업구조조정촉진법	채무자회생법
대상기업	**정상기업**	**부실징후기업**	**부실기업**

○ **(경과)** '19.8월 法 **개정**을 통해 **일몰을 연장**(~'24)하고, 기존의 과잉 공급 뿐만 아니라 **신산업진출· 산업위기 지역 유형을 추가**

○ **(지원)** 기업의 **사업재편 계획을 심의**하고, **승인기업에게 맞춤형 지원**

*** (인센티브) 절차 간소화**(상법·공정거래법 등), **자금, 세제, R&D 우대 등**

< 일본 사업재편 추진 사례 >

◈ **장기불황 극복**을 위해 **추진한 재정확대 정책(~'80년대말)의 효과가 미미**
→ '90년대 말부터 **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정책**으로 전환

◈**'99년 산업활력재생법(産活法)*을 제정**, 현재까지 **총 739건의 사업재편 지원 중**

* 산업활력재생법('99~'09) → 산업활력재생 및 혁신법('09~'13) → 산업경쟁력강화법('18~)

- **(미츠비시히타치社) 정부지원(등록면허세 감면)**을 통해 미츠비시와 히타치가 **합작법인을 설립**(제철·발전 통합)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(매출규모 20조, 세계 3위)
- **(도사덴교통社) 도사전기철도, 도사덴드림서비스, 고지현교통 3사는**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된 **노선버스 사업부문을 통합한 후 회사 신설**

* 사업재편 인센티브: 금융기관 채무경감, 지자체는 총10억엔 신규 출자

◈ 우리나라는 일본사례를 모델로 기업활력법을 제정('16)했으나, 일본에 비해* **적용범위가 제한**적이며 **인센티브 지원이 미흡**

* 日 : 모든 기업적용(제한無), 금융프로그램 법률 명시(장기·저리 융자, 자금차입 보증)

2 운영현황 : 현재까지 총 128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·승인

○ **(규모별)** 중소 106개사(83%), 중견 15개사(12%), 대기업 7개사(5%)

○ **(지역별)** 非수도권 소재 기업이 70%(90개사/128개사)

○ **(유형별)** 과잉공급 112개사, **신산업진출 14개사**, 산업위기지역 2개사

○ **(업종별)** 조선, 기계, 철강, 석유화학 **업종이 67%**(86개사/128개사)

업 종	조선	기계	철강	석유화학	유통·물류	자동차부품	섬유	전선	반도체
승인기업수	39	23	14	10	7	8	5	5	4

* 기타(13) : 엔지니어링 3, 태양광셀, 자동차정비, 배터리팩, 경비용역, 제지, 전기전자, 통신방송장비, 전자회로, 제약, 디스플레이각 1개

○ **(고용·투자)** **승인기업 86개사** 이행점검('20.6월) 결과, **신규고용 5,130명 및 투자 2.15조 원 이행**(당초계획: 신규고용 1,893명, 투자 2.05조원)

< 사업재편 승인 기업 우수사례 >

승인기업	규모	신규 고용(계획대비)	투자액	경영 향상	
				생산성	재무건전성
H (석유화학)	대	626명 (120명/522%)	약 7,305억원	33%	112%
A (반도체)	중견	819명 (135명/607%)	약 316억원	17.1%	51%
Y (조선기자재)	중소	36명 (3명/1,200%)	약 42억원	180%	양수전환

2 문제점 분석

1 (기업수요) 기업 인지도 + 적극적 수요발굴 부족 → 활용 및 우수사례 부족

○ 산업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 적극적 수요발굴 없이 **불특정 개별 기업의 신청에 의존 → 산업생태계 혁신 파급효과**가 **미미**

*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(당초목표: 50개/년): ('16) 15→ ('17) 51→ ('18) 34→ ('19) 9→ ('20.8월) 19

○ **사업재편에 대해 모르거나*, 알고 있더라도 신청요건·승인 문턱이 높고 과잉공급·한계기업 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**

* 기업활력법 "전혀 모른다 61.4%", vs "잘 안다 0.61%" ('20.6월 중견기업연구원 실태조사)

- 사업재편 **적용대상이 제한적***이어서 **제도 활용에 제약**

*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타격을 감안, 단기간 급격한 어려움을 겪는 업종(정유, 항공 등)에 대해 사업재편 대상 적용 확대를 요청

2 (지원방식) 계획수립부터 이행점검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부족

○ 역량이 부족한 신청기업도 자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여 **실현 가능성 보다는 희망사항** 위주로 **반영**

○ **신규 심의·승인에만 집중하여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이 미흡***

* 연 1회 승인기업의 **계획달성 여부를 점검**하는 **"사업재편 계획 이행실태조사" 가 전부**

3 (인센티브) 막대한 매몰비용과 투자 리스크*에 비해,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

* 기업에게 신규 사업진출은 '공포'이며, 진입장벽도 높아 실패 확률이 95% (B컨설팅社)

【 기업 현장의 목소리 】

◈ 『**대한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설문조사**』('20.5월, 100개사 대상) 결과,

- **78%가 혜택이 불충분**하다고 답변/ **①정책자금(34.5%), ②세제(21.8%), ③R&D(21%)** 順

❶ **(정책자금)** "기존 사업 침체, 신사업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**재무상황,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심사**로 신규 자금확보가 어렵다" (경남 D사 등)

❷ **(세제)** "과잉시설 처분 또는 신산업 진출할 때 **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감면 등**을 통해 **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** 함" (울산 H사 등)

❸ **(R&D) "기존 정부 R&D**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위주로 선정,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려는 기업은 **사실상 진입 불가"** (부산 M사 등)

○ 실효성 있는 지원 부족으로 **승인기업 128개의 지원 건수가 49건*에 불과**

* 지원내용(총 40개 社, 49건) : 중소기업 정책자금(21건), 과세이연(7건), R&D 우대 (7건), 합병분할 간소화(6건), 기업결합심사특례(2건) 등

○ 또한, **코로나 19 충격으로 승인기업들도 계획이행에 어려움* 호소**

* 최근 **이행점검 결과('20.6월), 총 37개 기업 중 16개 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이 지연**

- ▲주요기업의 발주 지연, ▲대기업의 사업장 철수, ▲설비 매입 희망기업 전무 등

Ⅲ. 사업재편 활성화 추진방향 (사업재편 2.0)

비전	**선제적 사업재편 확산으로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**
전략	‣ 테마형 수요발굴로 적극적 참여 유인 및 구조혁신 뒷받침 ‣ 사업재편 전주기 맞춤형 밀착지원 강화 ‣ 제도 실효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

추진방향	「사업재편 1.0」	「사업재편 2.0」
1. 수요발굴	개별기업 신청중심 수요발굴 노력 부족 인지도 부족 →	❶ 정책적으로 중요한 업종·지역 테마별 산업생태계 기업 群 단위 ❷ 대상·요건 완화로 문턱 제거 ❸ 기업 눈높이 홍보, 양방향 소통 강화
2. 지원체계	신규 승인에 초점 부처·기관 간 협력 부족 →	全 과정 지원강화, 부처 간 협력체계 ❶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사업재편 全 단계 지원 시스템 보강 ❷ 관련 부처 · 사업과 협력 강화
3. 인센티브	사업재편 리스크에 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부족 →	맞춤형 혜택 대폭강화→ 과감한 도전 뒷받침 ❶ (자금) 정책자금 특례, 펀드 투자 ❷ (역량강화) 전용 R&D, 사업화 지원 등 ❸ (중장기) 세제지원 강화 검토

Ⅳ. 세부 추진과제

1 〔수요발굴〕 업종·지역 테마형 발굴 및 적용범위 확대

◇ 개별기업 단위 수동적 수요발굴이 아닌 **핵심정책과 연계하여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촉진**, **문턱을 완화**하고 **홍보도 강화**

1 **(산업생태계 접근)** 사업재편이 개별기업 발전은 물론 **산업구조 혁신의 전기**가 되도록, **핵심테마 중심 "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" 촉진**

❶ **(업종테마)** 신산업 육성*,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 연결해 미래 경쟁력 선점, **업종별 정책과 연계지원 강화**

* (예) ❶ (자동차) 내연차 → **미래차** (☞ 6.24일 1차로 6개 기업 승인 완료)
❷ (디스플레이) LCD → **차세대 디스플레이**
❸ (발전설비) 전통 에너지→ **친환경 에너지, 그린뉴딜**

❷ **(지역테마)** 17개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**지역산업 생태계 특성에 부합**하는 기업을 발굴하고, **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**

* (경남) 기계·자동차 부품 (부산) 조선 기자재 (대구) 섬유 (충남) 디스플레이 등

❸ **(상생테마)** **수요자인 대·중견기업과 공급자인 협력사가 공동 참여**하고, **지원 패키지(지역, 업종 정책연계)를 추가 제공**하는 **상생형 모델 구축**

2 **(문턱제거)** 사업재편 **적용대상 및 승인요건을 대폭 완화**

❶ **(과잉공급 요건)**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**단기간 내 실적이 급격히 악화**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 등을 포함한 全 **업종지원**

* "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(고시)" 제4조 제3항에 따라 "과거실적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내 **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"도 적용**

☞ 본 방안의 결정, 운영 또는 집행과정에서 **고의·중과실이 없는 행위 및 그로 인한 발생 손실**에 대해 **행정상 제재 면책 및 평가 시 불이익 금지**

❷ (승인요건) 사업혁신 활동*을 폭넓게 해석

* "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" 제3조의 사업혁신 내용인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 外에 **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활동, 디지털 전환 등도 포함**

3 (인지도 제고) 사업재편 제도 홍보 및 양방향 소통 강화

❶ **기활법 종합포털(oneshot.or.kr)**을 **사업재편 종합소통창구**로 전면 개편*

* (현재) 일방향 정보 전달 → (개편) 양방향 소통과 피드백 기능 추가

* 온라인·비대면 사업재편 상담 및 신청, 진행 상황 확인 기능 추가

❷ 기업 친화적인 **디지털 콘텐츠**를 제작*하여 **뉴미디어 홍보를 강화**

* **SNS, 카드뉴스, 사업재편 우수사례 동영상 및 책자, 정기 뉴스레터** 등

❸ **'사업재편 포럼' 개최**를 통해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**자발적 공동 사업재편*** **모델**을 확산

* (예) 한계기업이 보유한 유휴자산과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접목

❹ **「사업재편 인증서」**를 수여하여 승인기업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, 기업 눈높이에 맞은 **"사업재편 브랜드명"**을 신설

2 (지원체계) 전주기 지원 및 부처 간 협력 강화

1 (전주기 지원) 사업재편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全 단계 기업지원 시스템 보강



❶ **(계획수립) 효과적 사업재편 전략** 수립 및 **맞춤형 인센티브 설계 사전 컨설팅, 규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** 가동

○ **(사전컨설팅)** 계획수립 과정에서 **기업 수요를 받아 해당기관*이 맞춤형 컨설팅**을 제공 → 사업재편 지원 실효성 강화**

* 컨설팅 기관 : 중진공·산은(정책자금), 산단공(입지), KOTRA(수출), KIAT·KEIT(R&D) 등

** 기업별로 가장 필요한 혜택을 사전 수요조사 후 해당하는 기관과 매칭하여 상담실시

○ **(규제애로)** 사업재편 참여기업이 규제 여부 확인 또는 해소를 신청하는 경우, **규제개선·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처리**

< 사업재편 신청기업 규제애로 해소지원시스템 >

규제접수 (산업부)	→	규제애로 확인 및 해소		→	진행현황 통보 (60일 내)
		◇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여부	· 소관 부처에 송부하여 검토 요청		
		◇ 규제 개선	· (산업부 규제) 산업부에서 검토 · (타 부처 규제) 규제 소관부처 및 국조실 검토요청		

❷ **(심의)** 수요자(신청기업) 입장에서 **심의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***

* **신산업판정위원회**는 서면심의로 추진 / **심의서류 양식을 대폭 간소화**

○ **긴박한 경영여건**에서 사업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기업*에 **신속심의 절차**(Fast-Track, 최대 3→1개월 이내) 시행

* (예시) A사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**소규모 분할 및 매각을 긴급 결정** : **서면으로 사업재편 신속 심의· 승인 → 이사회 의결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갈음**

❸ **(승인이후)** 원활하고 차질없는 **이행**을 위해 **사후지원 강화**

○ **(기업지원) 승인기업 간담회**(분기별)를 개최하여, 이행과정 상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확산

○ **(애로해소형 이행점검) 사업장 방문 및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***

* (現) 추진 상황을 서면 확인 → **(改) 이행지연·애로 발생 기업 현장 방문 상담**

○ **(최종평가)** 사업재편 종료기업의 **목표달성 여부 평가 및 추가지원 검토**

* '16.9월 최초 승인한 총 17개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종료(3년)에 따라, "사업재편 최종평가" 방안 마련 및 최초실시('20.9.)

2 **(사업전환 사업과 협업 강화)** 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**사업재편**(산업부)**- 사업전환**(중기부) **사업 간 협력 추진**

<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제도 비교 >

구 분	사업재편	사업전환
법률(제정)	기업활력법('16)	중소기업사업전환법('06)
지원 목적	**산업구조 고도화**	**중소기업 경쟁력 강화**
승인요건	ㅇ구조변경, 사업혁신 요건 충족 ㅇ지배구조 강화, 부당지원에 미해당	ㅇ업종전환(100% 사업전환) 및 업종추가(매출액 기준 30%)
대상	대·중견·중소 **(정상)**	중소기업 **(정상·부실)**
승인기업('16~)	총 128개사	총 651개사

○ **(신청단계)** 기업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재편·사업전환 신청기업에 대해 **兩 제도 승인요건을 함께 검토**

* 산업부-중기부 협력을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재편·사업전환 적합성 신속 검토를 위한 **통합 가이드라인 마련**

○ **(승인단계)**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대·중견기업 **협력 중소기업**이 **사업전환** 신청 시 **신속 승인**하는 **"사업전환 패스트트랙"** 운영(15일 내)

* 대·중견기업의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·사업전환 **컨설팅 지원**

○ **(지원협력) 사업재편·사업전환 승인기업 간 지원 협력 강화**

- **사업전환 우수기업**(중기부 추천)**에 "사업재편 R&D" 우선 지원**

- **사업재편 승인기업**에 **사업전환정책자금***을 **우선 평가 및 기간 단축**

*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신청을 받아 중진공이 심사 → 최대 100억 원까지 시설·운전자금 융자 ('20년 예산 1,600억 원)

- 시설자금(설비도입, 사업장 건축 등) 및 운전자금(제품 생산, 기업경영 소요비용 등)을 정책금리(2.15%) 수준으로 융자

3 [인센티브] 과감한 도전 유인 ⇒ 혁신의 trigger

◇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**자금, 투자, R&D 등 사업재편 지원을 보강**
→ 기업의 **사업혁신 도전의 리스크를 완화**

1 자금애로 해소

❶ (특별 지원)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정책금융 특례 적용

○ **"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*"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****

* 혁신성·성장가능성이 높은 1,000개 중견.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한도 상향(대출· 보증), 금리 우대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(3년 40조원)

** 1차 선정('20.7월) 총 32개 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 4개 포함

○ **중소기업 정책자금*(중진공), 산업구조고도화**(산은), 우대보증***(신보) 등**

* 적용금리('20 3/4분기) : (2.15+α)%, '20년 지원 규모 확대 : 960 → 1600억 원 (1차추경)
** 최대 △0.7%p 금리감면 *** 보증비율 90% 적용 및 보증료율 0.2%p 차감

❷ (사업재편 지원펀드 조성) '21년 중 신규펀드(약 200억원) 조성 +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, 한국형 뉴딜펀드 등 활용

○ **(배경) 성숙기에 접어든 주력산업 생태계 내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곤란*하여 혁신이 지체**

* 창업(엔젤·벤처투자/중기부) 및 부실기업(국책금융·PEF/금융위)에는 다양한 금융이 제공되나 사업재편 기업은 자금조달의 사각지대

○ **(특징)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사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先 설계한 이후 투자를 매칭**

* **기존 펀드는 투자업종만 지정**하고 **혁신전략 제시 등 산업역량 강화 관점 부족**

○ **(대상) 디지털뉴딜, 그린뉴딜, 신산업 진출 등 사업재편 추진기업**

* 승인기업 외 신규 신청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수립 시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 지원

☞ **「사업재편 펀드 추진 TF」('20.9월~)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 및 구체화**

2 신산업 진출 역량 확보 지원

❶ **(전용R&D)** 기존 정부R&D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**사업재편 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R&D 신설** ('21년 100억 원)

< 사업재편 전용 R&D 사업의 필요성 >

기존 R&D 사업		사업재편 전용 R&D 사업
■ (과제) **국내 최초 개발기술 중심**	⇨	■ (과제) **새롭게 진출하는 신산업 분야**
■ (주체) **R&D과제 수행역량 최우수 기업**		■ (주체) 신산업에 진출 사업재편 기업
☞ 해당 분야 **기존 우수역량 주체 선발**		☞ **새로운 시장진입 주체의 혁신활동 지원**

❷ **(사업화 지원)** 승인기업 **맞춤형 신산업 진출 초기 사업화 지원*** ('21년 20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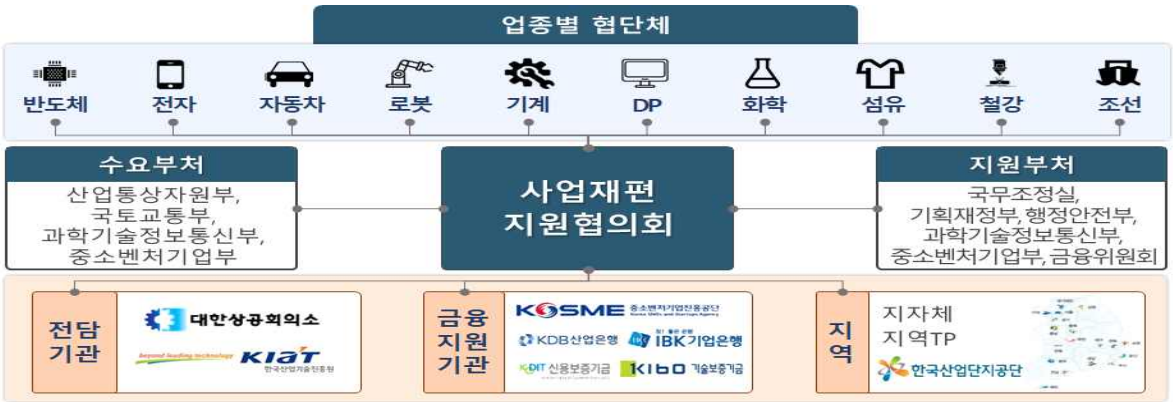
* 사업재편 종합컨설팅, 애로기술 해결, 시제품 제작, 평가·인증, 장비활용 등

- 분야별 사업재편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여,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병행

❸ **(지원 네트워크 확충)** 협회, 지자체·지원기관 등으로 **"사업재편 지원 협의회"**를 운영하여 **수요발굴부터 이행지원까지 협력 강화**

○ **산업 진출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진흥원(KIAT)을 旣지정**

< 사업재편 지원 협력 네트워크 (案) >



3 추가 지원 방안 중장기 검토

❶ **(세제)** 많은 기업이 과감·신속하게 상시적으로 **사업재편**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자산매각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굴·협의**

❷ **(기타)** 사업재편 도전을 **"제2의 창업"으로 활성화 → 창업기업에 준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**을 추가 검토 (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)

Ⅴ. 향후 추진일정

주요 정책과제	소관부처	일정
1. (수요발굴) 업종·지역 테마형 발굴 및 적용범위 확대		
[1] 테마형 사업재편 수요발굴	산업부	'20.6~
[2] 적용대상 및 요건 완화	산업부	'20.9~
[3] 인지도·접근성 강화	산업부	'20.9~
2. (지원체계) 전주기 지원 강화 및 부처 간 협력		
[1] 사업재편 전주기 지원강화		
❶ (사전) 사전 맞춤형 컨설팅 도입	산업부, 금융위, 중기부	'21~
❷ (사전) 규제 애로 해소 지원체계 강화	산업부, 국조실	'20.9~
❸ (심의) 절차 및 서류 간소화 / 신속심의 도입	산업부	'20.9~
❹ (승인후) 사후 지원 및 관리 강화	산업부	'21~
[2] 사업전환 사업과 협업 강화	산업부, 중기부	'20.10~
3. (인센티브)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혜택		
[1] 사업재편 자금애로 해소		
❶ 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 지원	산업부, 금융위, 중기부	'20.7~
❷ 사업재편 전용 펀드 조성	산업부	'21~
[2] 신산업진출 역량확보 지원		
❶ 사업재편 전용 R&D 사업 신설	산업부, 과기부, 기재부	'21~
❷ 성과창출 사업화 지원	산업부, 기재부	'21~
❸ 사업재편 지원협의회 운영	산업부	'21~
[3] (중장기) 추가 지원 방안 검토		
❶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발굴·협의	산업부, 기재부 등	'21~
❷ 창업기업에 준하는 종합 지원방안 구체화	산업부	'21~

참고 **현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내용**

분 야	주요 지원 내용
절차 간소화	■ 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
	■ 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 (상법: 2주)
	■ 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 (상법: 1개월)
	■ (주주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 (상법: 20일) ■ (회사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(상장회사) 3개월 (상법: 1개월), (비상장회사) 6개월 (상법: 2개월)
규제유예	■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: 3년(공정거래법: 1~2년)
	■ 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: 1년 (공정거래법: 6개월)
	■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: 3년 (공정거래법: 2년)
세제	■ (법인세) -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,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- 이월결손금 100% 공제(대기업도 적용)
	■ (등록면허세) 합병·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입지특례	■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→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
자금	■ (정책자금)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- '20년 3/4분기 적용 금리 (2.15+α)%, 지원 규모 확대(960→1600억원)
	■ (우대지원) 산은·기은, 기보·신보 등 융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은) △0.2~△0.7%p, (기은) △1%p, (기보) △0.2%p, (신보) 보증비율 90%적용 및 보증료율 0.2%p 차감 등
	■ "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"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- 대출·보증 우대,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, 민간자금 유치 혜택
	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→ 축소가능)
고용안정	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■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
정부사업 우대	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,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
	■ 정부 R&D사업 우대가점, 중소·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(중소3, 중견5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
신산업진출 지원	■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&D 지원(전용 R&D사업, '21년~) ■ 수요맞춤형 신산업 진출 사업화 지원('21년~) * (지원규모) 기업별 최대 5천만원, 중소·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